중국의 개호 및 복지정책의 동향

2012년도 중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관련 위원회, 각급 정부 및 각급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고령자의 개호 및 복지에 관련된 대표적인 법규 및 정책은 다음과 같다.

분야	정책 명칭
종합	□중국 인민공화국 노령자권익보장법
양로 보장 *(노인보장)*	□「사회보장 "125*(12차5개년의 약자)*"계획 요강」에 관한 통지 (국무원) □최저생활보장 강화에 관한 의견 (국무원) □「2012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의견」에 관한 통지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 □「중국농촌경제발전 "125"계획」에 관한 통지 (발전개혁위원회) □「사회보장기금 재정관리 강화와 규범」에 관한 통지
의료/위생	□「위생사업발전 "125"계획」에 관한 통지 (국무원) □「"125" 기간 내에 의약위생체제개혁규칙 실시방안」에 관한 통지 (국무원)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위한 2012년 주요업무 배치」에 관한 통지 (국무원 변공청(*사무청*)) □신형 농촌합작 의료지급방식개혁 업무추진을 위한 지도의견 (위생부) □2012년 신형 농촌합작 의료업무에 관한 통지 (위생부 제3부문) □「"125"기간 내에 위생빈곤 감축을 위한 지도의견」에 관한 통지 (위생부)
고령자 서비스	□「국가기본 공공서비스 체계 "125"계획」에 관한 통지 (국무원) □취업계획(2011~2015) 촉진에 관한 통지 (국무원) □중부지역발전촉진전략에 관한 의견 (국무원) □「인구계획 생육*(성장)*위원회 빈곤지원사무소」의 『인구계획생육 및 빈곤지원공동추진에 관한 의견』에 관한 통지 (국무원 변공청) □민간자본 양로서비스 산업진입 촉진에 관한 실시 의견 (민정부)

	□사회사업 전문인재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2011~2020년) (민정부) □지역위생계획 및 의료기관설치계획, 민영의료기관 발전촉진에 관한 통지 (위생부)
환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환경건설 조례
문화건설	□고령자문화창조 강화 및 촉진에 관한 의견 (중국 노령공작위원회 변공실) □「문화부 "125" 기간 내에 문화개혁발전계획」에 관한 통지 (문화부) □「국가교육사업발전 "125"계획」에 관한 통지 (교육부)
사회관리	□말단고령자*(초고령자)*협회 설립에 관한 의견(중국노령공작위원회 변공실)
가정건설	□「중국무역발전 "125"계획」에 관한 통지 (국무원 변공청) □「가정교육추진 5개년계획(2011~2015년)」에 관한 통지 (중국부녀자연합회, 교육부,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 변공실, 민정부, 위생부, 국가인구 및 계획생육위원회, 중국차세대공작위원회)

(1) 「중국민정과학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의 개요」(2009~2020년)

「중국민정과학기술발전 중장기계획의 개요(2009-2020년)」는 민정사업*(민생사업)*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입안한 계획이다. 주요 연구개발 중점 테마로 9가지를 선정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재활기기에 관한 내용이다.

■ 계획 개요

중국어 명칭 : 《全国民政科技中长期发展规划纲要(2009-2020年)》的通知

공 표 기 관 : 중국 민정부

공 표 일 : 2009년 7월 13일

■ 계획내용

발전구상	고령자 및 장애자용 재활기기의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기초 및 응용기술의 연구프로젝트추진에 따른 「생산, 학습, 연구, 실용」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설립을 지향한다.
우선과제	(1) 재활기기의 기본원리에 대한 연구 □각종 재활기기의 제작원리, 장애자의 장애발생 및 기능회복 메커니즘의 중점적인 연구 (2) 사람과 일체화 되는 기기에 대한 연구 □사람, 기기, 환경일체형, 상호작용형 지능 장치(Intelligent Device)에 대한 연구개발 (3) 기능보완형 기기에 대한 연구 □장애자의 기능보완형 기기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중증 장애자의 개호 및 생활보조기술 및 설립에 대한 연구개발 (4) 재활훈련용 기기의 연구 □장애자의 기능회복재활과 동등한 수준의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술 등을 결합한 레크리에이션 기기 개발 (5) 재활기기용 재료 및 전문설비에 대한 연구 □재활기기에 생물의학재료, 나노재료, 경량재료 등을 응용하고, 재

	활기기 생산을 위한 신규프로세스, 신기술,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는 전용설비에 대한 연구 (6) 재활기기의 품질검사 연구 □재활기기의 검사이론, 방법, 검사설비 및 제품의 품질분석, 평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 (7) 재활기기의 임상시험 응용연구 □재활기기를 임상시험에 응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 각종 신규 기기, 신재료, 신설비 개선방법에 대한 연구 (8) 재활서비스에 대한 연구 □고령자, 장애자의 기능장애 재활, 개호기술, 상담기술 등에 대한 연구

(2) 「중국고령자사업발전 “125” 계획」

「중국고령자사업발전 “125” 계획」은 중국의 고령자사업에 관한 제12차 5개년계획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관련 사업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 계획 개요

중국어 명칭 : 《中国老龄事业发展“十二五”规划》

공 표 기 관 : 국무원

공 표 일 : 2011년 9월 17일

법 령 번 호 : 국발(国发) [2011] 28호

■ 계획내용 (고령자 양로*(노인돌봄)*서비스에 관련된 항목)

발전목표	□고령화전략체계의 기본적인 프레임 구축, 고령자사업의 중장기발전계획 책정, 실시 □도시부문・농촌부문 주민을 커버하는 양로보험체계 완비, 모든 고령자에 대한 기본적인 양로보장 혜택 실현 □고령자 기본의료보장체계 완비. 관할구역 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전개 □자택양로를 기초로 하여, 사회 및 시설에서 양로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전국 고령자 1,000명당 30상(병상)의 양로침대 설치 □양로와 관련된 공사(工事)의 기술표준사양 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시설 도입 및 고령자 커뮤니티시설 신설 등의 건설 계획 추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및 교육, 스포츠건강활동 시설 증설, 노인대학의 규모확대 □고령자관리위원회 설립, 고령자협회보급률 80% 이상, 자택 외 고령자 서비스혜택 대상 수를 고령자 전체의 10% 이상
주요항목	**Ⅰ. 고령자 사회보장** 1. 양로보장제도 구축의 가속화 □신형 농촌사회 양로보험, 도시부문 주민의 양로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급확대

	□도시부문 직원의 기초양로보험제도 개선, 농촌부문에서 양로보장 제도 추진, 공무원의 양로보험제도 개혁 실시 □기업연금, 직업연금의 발전, 상업보험 확충 2. 기초의료보험제도 개선 □도시부문 직원 및 주민의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부문 의료보험 제도 개선. 표준의료보험의 보장수준 향상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 □직원 및 도시부문 주민의 의료보험, 신형 농촌부문 협력 의료보험의 지급금액을 정부부담 범위 내에서 입원비용에 대한 지급비율 향상 □상업건강보험 발전에 따른 의료보험제도 보완 3. 고령사회 지원제도 완비 □도시부문·농촌부문의 최저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최저생활보장 제공 □의료구조제도의 개선. 빈곤고령자 대상 기초의료보장, 임시구조제도 개선 및 일시지급을 통한 생활곤란 구제 4. 고령자 사회복지제도 개선 □중국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제도의 발전모델 모색. 빈곤고령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부 보증 서비스 제도에 대한 연구 □고령자 대상 생활급부 및 빈곤고령자 대상 양로서비스 급부 지급 등 고령자우대방법 개선, 사회복지수준 향상 **Ⅱ. 고령자의 의료·위생·보건** 1. 고령자 의료위생서비스 거점건설 및 관련 종사자의 자질향상 추진 □위생사업발전계획에 따른 고령자전문병원, 양로원, 고령자재활병원, 종합병원 노인병 진료과 건설 강화 □1차의료위생기관에서 고령자용 의료, 간호, 위생보건, 건강관리, 재택재활, 재택간호서비스 확충 □전문종사자를 육성하여 고령자 대상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2. 질병예방정책의 추진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고령자 건강기록시스템 확립. 정기검진 실시를 통해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조언 제공하여 조기대책 촉진. 고령자질환에 대한 지식 보급을 통해 예방의식 향상

3. 고령자보건사업의 발전

□건강교육, 보건지식을 보급하여 고령자의 심신양면에 대한 건강의식 향상

□고령자 정신건강에 대한 케어, 자가돌봄(self-care), 자기관리, 장애예방, 자기관리 등의 건강가이드 제공

□고령자 가족에 대한 훈련 및 지원 실시를 통하여 가족의 역할 향상

Ⅲ. 고령자의 가정건설

1. 고령자의 거주환경 개선

□고령자가 살기 좋은 주택, 2세대가 함께 거주 가능한 주택개발 추진. 고령자와의 공동생활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방식 추진

2. 가족의 양로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부양가족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호적이동관리제도 개선

□농촌부문에서 한자녀 정책을 고수한 가정 대상으로 보조제도 개선

3. 효도 및 경로 관련 전통미덕에 대한 표창

□경로사상과 화목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제안, 고령자의 행복지수 향상

Ⅳ. 고령자 서비스

1. 주택관련 양로서비스의 중점적인 발전

□중국의 행정구역을 현(시, 구) 단위, 향과 진(도로명) 단위, 사구

	(동) 단위의 3단계로 나누어 서비스네트워크 구축. 재택 양로서비스를 도시부문에서는 동 단위 수준에서 100%, 도로 단위 수준에서 80% 이상, 농촌부문에서는 50% 이상 정비 □고령자서비스를 비롯한 사구(동)단위 종합서비스 시설 설립. 재택양로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플랫폼 시행사업 실시 2. 사구*(행정단위)*단위에서 양로서비스 발전에 주력 □중일(中日)개호서비스, 탁노소(宅老所), 사구 단위에서 공동형태의 양로서비스센터 시설 등을 사구가 주체하여 건설 및 설립 3. 시설 양로서비스 사업 발전 □고령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서비스에 대한 통일된 계획 입안 및 제시 □각종 고령자 시설에 침상 342만개 신규 증설 4. 개호 및 재활서비스 자체의 발전 □고령자 개호시설, 재활시설의 건설강화, 장기의료개호, 재활, 말기간호(terminal care) 등의 기능을 보유한 양로기구에 대한 중점적인 투자 5. 양로 서비스사업의 감독강화 □양로시설 행정관리에 관한 법률 및 법규 개선. 입주형 양로시설의 소방안전, 위생허가제도 강화 **Ⅴ. 고령자의 생활환경** 1. 고령자의 활동장소 및 편의시설 건설 확충 □고령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환경 건설. 공원, 잔디밭, 광장 등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운동장소 확보 2. 고령자 관련 시설의 건설기술 규격체계, 실시감독제도 개선 □현행 고령자시설 건설기술사양에 따른 전면적인 정리, 심사, 정정 및 개선. □계획, 설계, 시공, 감독관리, 검사(확인) 등 모든 공정에서 기술사양 적용과 감독 강화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건설 추진 □신체부자유 고령자를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건설추진. 커뮤니티, 녹지, 도로, 건물 등의 개수작업 추진 4.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개발 및 커뮤니티 조성 추진

	□고령자가 살기 좋은 도시개발 및 커뮤니티 조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 확립. 가이드라인 작성 등을 통한 견인 작업 **Ⅵ. 고령자 대상 산업** 1. 고령자 대상 산업에 대한 정책 개선 □고령자 대상 산업의 국가지원산업화. 고령자용품 시장의 육성, 확대 □고령자 대상 산업발전을 위한 대출, 투자 등의 지원정책 연구. 고령자 대상 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장려 2. 고령자용품・서비스의 개발촉진 □재활지원기기, 전자호출시스템 등 고령자전용 제품개발 촉진 □고령자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 고령자 대상 산업의 파워브랜드 육성 3. 고령자 여행서비스 강화 □고령자의 니즈, 연령특성에 맞춘 여행상품을 적극 개발 4. 고령자 대상 산업의 건전한 발전 유도 □고령자 제품의 품질기준 설정, 고령자 대상 산업의 시장관리감독 강화 □고령자 대상 산업발전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의 정비

(3) 중화인민공화국 고령자권익보장법

중화인민공화국 고령자권익보장법은 1996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고령자에 관한 종합법률로 사회보장 및 교육, 고령자의 권리 등 고령자에 대한 시책의 기본적인 관점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012년 12월 28일 제11회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개정법을 채택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 법률 개요

중국어 명칭 : 《中华人民共和国老年人权益保障法》

공 표 기 관 : 중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 정 법 채 택 : 2012년 12월 28일

개 정 법 시 행 : 2013년 7월 1일

■ 법률 개정내용

개정 전후 비교	「고령자권익보장」에 관한 법률 조문은 개정 이전에는 50조였으나 개정 이후 85조로 내용이 큰 폭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내용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법에서는 음력 9월 9일을 노년절(고령자의 날)로 제정하였다.
개정 내용	1. 고령자의 기본권리를 집중적으로 규정. 국가 및 사회가 물질적인 원조 실시, 사회서비스 및 사회적인 우대 혜택, 사회발전에 참가 및 성과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고령자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2. 국가의 장기전략상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규정. 법률상 고령자 전략에 대한 위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으로 고령자사업을 추진함. 3. 고령자의 사회보장체계, 사회양로 서비스시스템, 고령자 우대정책의 기본규정을 제정함.

	4. 예산 확보, 규정 제정, 고령자사업추진권한이라는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정부가 고령자사업 발전, 고령자권익보장사업 추진을 실시하기 위한 권한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함. 5. 고령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으로 사회의식을 강화하고, 경로, 양로, 노인돌봄이라는 사회문화 형성 촉진을 꾀함. 6. 고령자사업에 관한 과학연구, 조사사업, 공공제도를 규정함. 7. 고령자의 적극적인 사회참가를 장려하기 위하여, 사회에 공헌한 고령자를 선정 및 표창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함. 8. 음력 9월 9일을 노년절(고령자의 날)로 제정함.